

(현안 리포트) 남북 교류 협력 확대에 따른

형사 사법 공조 방안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는 말

6·15 공동선언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 추진 등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개성공단 개발 사업,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각종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 인적 교류의 증대로 상대 지역에서 방문자나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가¹⁾간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북한 내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형법이 1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 형법의 경우 반인권적 요소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북한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경우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정부가 국민의 신변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별개의 주권국가로 볼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를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에는 통상의 사법 공조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남북한 간의 형사 사법 공조 문제는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 형사법 적용을 배제한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법권 행사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남북한간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종전의 사법 공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독특한 사법 공조의

1)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국가보안법 등에 비추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북한 역시 그들의 지역 내에서는 그들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 사법 공조의 개념

형사 사법 공조란 범죄 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 행위를 의미한다. 협의의 형사 사법 공조(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는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기록의 제공, 서류 등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광의의 형사 사법 공조는 이외에도 범죄인 인도(extradition)³⁾를 포함한다. 보다 광의의 형사 사법 공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 형사 판결의 집행(execution of foreign sentences),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형사 소추의 이송(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같이 신뢰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남북 관계에서는 협의의 형사 사법 공조가 검토될 수 있다. 남북한 형사 사법 공조 내지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있어서 요구되는 남북한 형사 사법 공조는 통상의 국가 간에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여 북한의 형사 사법권 행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있어서의 남북한 형사 사법 공조는 통상의 국제 형사 사법 공조와는 그 목적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현황에 비추어 보아 주로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나 2003년 8월 2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시 북한 기자의 폭행 사건과 같이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남북한 공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3) 범죄인 인도란 협의의 형사 사법 공조와 함께 형사 사법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국제 협력의 형태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로 도피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자국에 체류하는 범죄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위하여 당해국에 그를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북한 형사 사법 공조의 필요성

남북한 주민이 상호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남한측 기업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 북한 지역을 왕래하거나 그곳에 장·단기간 체류하는 남한의 인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 표 1 >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형사 사건 처리 실태

	사건 개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억류	○ 남측 관광객이 귀순 종용을 이유로 억류된 사건(1999. 6. 20) - 억류 5일째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는 내용의 북측이 제시한 사죄문 초안을 베껴서 제출 후 남한으로 신병 인계됨 ○ 남측 관광객이 북한 체제 비판을 이유로 조사받은 사건(2001. 1. 4) - 장전항 안내소에서 10 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사죄문 쓴 뒤 풀려남
개성공단내 남한 근로자간 폭행 사건	○ 신축 공사 현장 숙소에서 상해 사건 발생(2004. 7. 26) - 주취 상태에서 동료 허벅지를 식칼로 찔러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함 ·북측은 피의자 신병을 남측 출입 관리소를 통해 남한 사법 당국에 인계, 남한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됨 ○ 개성공단 소재 식당에서 상호 폭행 사건 발생(2005. 5. 7) - 음주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요치 3주 및 8주의 상해를 가함 ·북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해당인들에 대해 기초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남측 사법 당국이 신병을 인계받아 형사 처리함
금강산 관광지구 내의 교통사고	○ 해금강호텔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2005. 12. 27) -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북측 인민군 3명을 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함 ·손해배상 협상 대상자인 현대아산측은 북한 당국에 위로금 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정씨 신병을 45일 만에 넘겨받음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억류, 조사의 사례에서는 북측이 북한 형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북한 형사 사법권을 행사하여 남한 관광객을 처벌하려 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내의 남한 근로자간 폭행 사건의 사례에서는 북한 사법 당국이 직접 정식적인 조사를 하거나 형사 사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남한 주민인 사건이라 북측이 개입할 필요성도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교통사고 사례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법무부 훈령 512호4)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에 따르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사고를 낸 남측 사람에 대한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5) 또 북측은 사고를 낸 남측 사람에 대한 접견권과 의사 소통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있어 북측 당국과 피해 보상 등 합의가 끝나면 신병을 인도받아 남한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표 2 >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남북한 형사 사법 공조 관련 근거

근거	주요 내용
남북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2004년 1월 29일 체결, 2005년 8월 5일 발효1)
북한 법령	· 개성공업지구법(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2)으로 채택) 및 하위 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 · 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남한 법령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처리지침 (법무부 훈령 제512호)」 - 2005년 3월 1일 제정·시행

주: 1) 금강산관광지구에 있어 남한 주민의 신변 보장에 관한 사항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 체결 이전에 남측 현대아산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움에 대하여,” 2002. 11. 13.

개성·금강산 지구의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법적 성격

2004년 1월 29일 남북 당국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4) 2005년 3월 14일에 제정된 법무부 훈령 제512호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처리지침」은 총 3장, 14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개성·금강산 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5) 한편 정보 씨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28일 서울 동부 지방 법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6고단891).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남측은 위 합의서에 대하여 2004년 9월 23일 국회 동의를 받았고, 2005년 8월 5일 문본의 교환에 따라 발효되었다. 위 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 안전 및 형사 사건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합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한 신사협정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조약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조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합의서 제10조는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 또한 위 합의서 제14조는 인원과 통행 차량 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북한 지역에 있어서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남북 당국간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합의를 통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종전에는 당국간 또는 사업자간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추상적인 신변 안전 보장 문구를 삽입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서에 규정하였다는 점은 법·제도적 장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 안전 및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 간의 합의 또는 북한과 외국 간에 체결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제10조 ‘신변안전보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남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물론 이들에 대한 처리 절차,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에 대하여도 규정한 것이다. 또한 남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 재판 관할권과 형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개성지역과 금강산지역의 특수성, 북한 형사법체계의 비민주성,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진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 회담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만으로는 법·제도적 안전 장치로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후속 합의서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위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개성·금강산 지구의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보완 과제

위 합의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있고 이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합의서 제12조에 의하면 남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전 작업으로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⁸⁾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는 남북한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충원하고 구성 초기에는 상당 기간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질서 위반 행위의 처리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 소속의 남북한 실무자가 지구내 상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금강산 및 개성지구에서 발생하는 남측 인원의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북한이 형사 사법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합의서에 의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형사 사법권을 행사할

8) 남북 상사 중재의 경우, 2000년 12월 16일에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2003년 10월 12일에는 「남북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위원 명단 교환 등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은 ‘엄중한 위반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합의서 제 10조 제2항 단서9)). 따라서 ‘엄중한 위반 행위’에 포함하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0)

이와 함께 형사 사법 공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합의서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질서 위반자에 대한 복측의 ‘중지’나 ‘조사’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주체를 누구로 하며, 그것에 수반하여 물리적 행사나 인신의 구금 등 강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어떠한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조사의 기간이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복측이 조사하는 동안 피조사자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합의서 제10조 제3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인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반 사실의 고지나 가족 등에의 통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 교통권, 통역인의 조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칙금 부과나 추방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가 있다. 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합의서 제10조 제3항)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은 피해 보상 문제와 피조사자의 신병 인도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사건 발생 후 북한 당국은 24시간 내에 한하여 피조사자의 신병을 유치할 수

9)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10)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현대와 아태간 체결한 합의서(1999. 7. 30)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위약금 징수,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추방, ‘강력한 형사 사건 등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남북한간 합의서의 ‘엄중한 위반 행위’는 불확정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11) 앞서 서술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북한 당국이 사고 조사와 피해 배상을 빌미로 하여 가해자인 남한 주민을 45일 동안 넘게 북한에 억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거액의 피해 배상이 있는 후에야 가해자인 남한 주민은 남한 지역으로 복귀하였다. 이 사례는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피해 보상 문제와 신병 인도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있되 피조사자의 신병을 피해 보상 문제와 결부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한 당국 혹은 관련 기관이 피해 보상을 보증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자나 체류자에 의해 상대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 다수의 남한 근로자가 방문·체재하고 있어 그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 여부나 국내법적 해석론과는 별개로 교류의 상대방으로서 사실상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속지주의에 기초한 북한의 형사 사법권이 남한의 형사 사법권과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국가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에 비추어 북한의 형사 사법권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 정서나 북한의 인권 현실에 비추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더욱 용인되기 어렵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북한 지역에 있어서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남북 당국간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합의서 상의 불확정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형사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과 남북한간 협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형사 사법 공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0년 2월 13~14일에 본(Bonn)에서 동서독간 형사 사법 공조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이 개최되어 10개 항의 합의를 도출하였다.¹²⁾ 이 전문가 회담의 합의 사항은 1990년 3월 30일에

담당부서 차원의 정식 서면 교환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독일 사법 공조는 국가 통일의 진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에 앞서 전문가 회담에서 그 실질적 해결 방안을 본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법률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1992년 체결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조 5항에서 이미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법률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된다면 남북 법률가들이 함께 남북 교류상 발생하는 형사 사법 공조를 포함한 여러 세부적인 법률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 1990년 2월 13~14일에 개최된 전문가 회담의 결과로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형사 사법 공조에 관한 10개항의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동·서독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위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 공조를 행하기로 합의한다.
- ② 동·서독은 각자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가능한 한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 ③ 동·서독은 행위지 재판적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상대 영역 출신의 피의자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 절차를 상대방에게 넘길 용의가 있다.
- ④ 동·서독은 원칙적으로 사법 공조에 대한 문서의 교류는 양측 관할 사법 기관 사이에서 직접 하기로 한다.
- ⑤ 각각의 법에 의하면 송달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를 직접 수송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⑥ 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그에 응하여 취하는 조치에, 소송 관계인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⑦ 동·서독은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또는 약식 명령 및 소송 비용 청구서 등에 대한 화폐 표시를 지급받을 나라의 통화로 표기하기로 합의한다.
- ⑧ 형사 소추라는 목적을 위해 연방중앙등록부(서독)와 형사등록부(동독)의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⑨ 동·서독은 각자의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증거물을 교부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 ⑩ 동·서독은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 수배하여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공조 요청을 할 수 있기로 합의한다.